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요건 강화〉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3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요건 강화(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2.
3. 회부연월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Ⅲ. 검토의견

1.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요건 강화

(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②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u>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4. <u>수탁기업의 서면요청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u>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u>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약정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u>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 ----- ----- --.

1. ~ 13의2. (생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으로 정의¹⁾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²⁾하고 있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①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³⁾

그런데, 현행법 하에서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위탁기업의 요구에 사실상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의 서면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합의 요구·유도에 의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무효로 하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대한 수탁기업의 협조를 이유로 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납품대금 연동 제도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거래상의 비대칭적 관계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위탁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의 조사에 대한 수탁기업의 협조를 이유로 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수급사업자가 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⁴⁾

한편, 국회는 지난 2025년 11월 13일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거래를 분할하여 체결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해당 개정법률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불이익 우려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이미 개정된 시행예정 법률을 통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⁵⁾ 및 손해배상청구⁶⁾를 통해 법률을 위반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연동 요구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실태·직권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자료 제출이나 진술 등을 이유로 한 위탁기업의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수탁기업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 단절 등 보복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제25조제1항제14호라목 신설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미연동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의 최초 요청자를 수탁기업으로 한정하여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서면 요청”을 강요·유도하는 방식으로 탈법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